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공제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원 대상 학교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지급
---	---	--	---------------------------------------	--	--

* 대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학교안전사고 발생	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인 치료 후 청구서류 준비	3. 청구서 작성	4. 공제회로 서류 제출	5. 심사	6. 결과통보
≡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 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7일 이내) 공제회로 통보 ≡ 통보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 등록 →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통보 처리 [통보 미처리 시 공제회로 전송 불가] 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 등록 → 작성자가 입력한 학교장 휴대전화로 안내메시지 발송 → 학교장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 → 자동 통보 처리 【주의】 학교장은 통지를 지체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학교안전법 제72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명세서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에 따른 경우) - 청구인(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 ▶ 진단서 추가 ✓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음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므로 요양급여 외 급여 청구 시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할 시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②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할 시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 시스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청구서식 출력하여 수기 작성 가능	≡ 2~3. 서류를 취합하여 - 온라인 청구 시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에 파일 첨부 - 오프라인 청구 시 : 등기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 시효 → 3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지급 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알림 문자 발송 ▶ 공제회에서 학교장에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 발송 ▶ 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전달



'요양급여'[치료 비용] 지급은 얼마나 되나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

구분	급여	비급여
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항목 지급
	지급대상	

- 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목
- 일부 항목 지급**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규정된 항목

*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여 항목이더라도 세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 :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초과액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비급여 항목을 알아보을까요?

구분	치료 항목 및 한도				
치아 보철 (한 대당)	보철	400,000원 범위 내 (2회 인정)			
	레진	120,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포스트	124,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임플란트	2,000,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단, 일반 보철 불가한 경우			
자기공명영상 (MRI)	1회 인정	무통제	인정	홀터 제거술	1회 인정
초음파	인정	재활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불인정	

-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행 전 해당 여부 확인!
- ✓ 의사의 소견서 및 영상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 여부 문의
- *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요양기관의 치료 지시 거부 및 방해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피공제자의 과실 부분(장해·간병·유족급여 산정 시 해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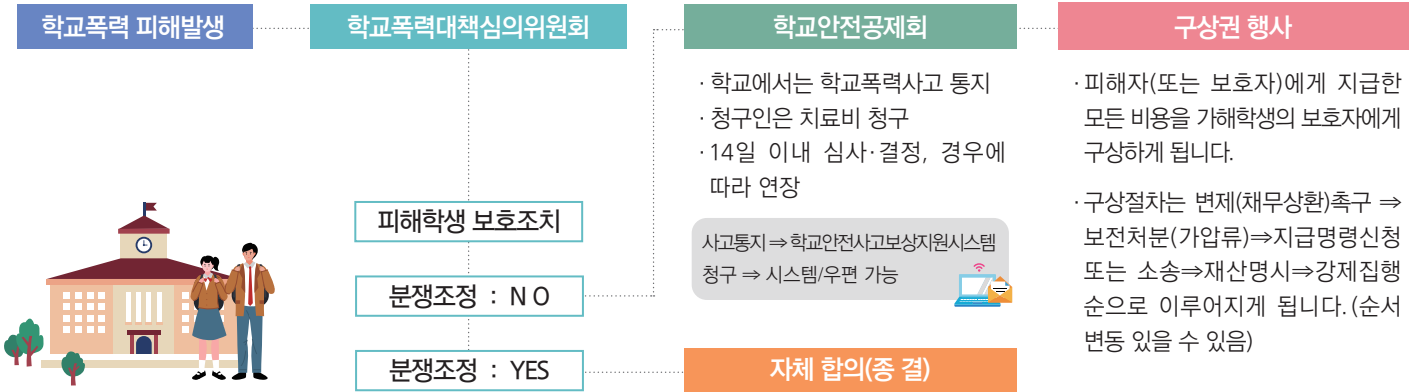


학교폭력피해 지원

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공제회가 우선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처리 절차



지원 범위 및 기간

구 분	세 부 사 항	인 정 기 간	비 고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 기관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치료를 위한 영양 및 의약품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의 치료비용 및 약제비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	30일	

※ 교육감 지정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 > 업무협약(MOU) > 업무협약(MOU) 체결현황)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치료비 등 청구액이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회 심사를 거쳐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

학교폭력사고통지(학교)	치료비 청구서
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서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가해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처방전
	진단서(공제회에서 요청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서약서 및 위임장(피해학생 측)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위임장, 청구서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출력하여 활용

지원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처리 절차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신청내용 심의·의결	지원·연장 확정	결정 내용 통지	지원 대상에 확정되는 경우 치료 비용 청구 가능
	피해자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지원·연장 대상자 확정 통보	치료 종결 후 비용 청구	치료 방법·비용 적정성 심의	결정 통지 비용 지급		
	학교안전공제회	청구인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대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 피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기 간 | 1년(연장 가능)

※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 신청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로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용 청구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청 시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치료비용 청구 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상담·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원본)	-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	상담·심리 치료비용 청구서 (원본)	-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원본)	- 대리 신청 시에도 청구인 직접 작성 및 서명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원본)	- 신청인이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청구인 통장 표지 (사본)	
진단서 (원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기타 서류	-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에서 출력하여 활용